

제419회 임시회

'24. 7. 15.(월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4년 7월 3일
-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3. 제안사유

- 5자녀 이상 초(超)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육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·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초 다자녀가정 정의(안 제2조 제2호)
- 초 다자녀가정 지원(안 제6조의2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“초 다자녀가정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, 초 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는 초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다섯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  - 초 다자녀가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.

### 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다자녀가정”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2. “초 다자녀가정”이란 다섯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
- 안 제6조의2는 초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  - 초 다자녀 가정의 양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.

### 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조의2(초 다자녀가정 지원) ① 도지사는 초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초 다자녀가정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, 초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초 다자녀가정의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- 다만, 초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518,000천원(도비 40%, 시군비 60%)이 계상되어 기(既) 의결되었으나, 도 내 11개 시·군 중 사업 대상이 가장 많은 청주시와는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. 따라서 청주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